

2021년 11월 22일 제정판

ESG 위원회 운영규정

LS 일렉트릭 주식회사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ESG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가 환경(Environmental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의 부문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 8 조의 부의사항을 사전에 보고 받고 심의·승인 한다.
- ②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간사에게 세부 현황 자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심의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그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②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의사를 집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소집)

-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

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- ③ 위원회 소집 시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, 늦어도 12 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7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8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승인사항
 - 1) ESG 전략 기본 방향 및 계획
 - 2) ESG 관련 중요 정책
- ② 보고사항
 - 1) ESG 추진 활동 및 성과
 - 2) ESG 관련 주요 동향

③ 내부거래 사전심의 사항

- 1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
- 2) 상법 제 398 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

④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회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9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진행사항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1 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지원부서)

-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.

② 지원부서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③ 지원부서의 조직장은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.

제 13 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(부 칙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2. (초대위원장) 제 5 조에도 불구하고 초대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